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 의 장

제44호 2022. 11. 16.(수)

고 시

- 광양시 고시 제2022-353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1
- 광양시 고시 제2022-354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3

공 고

- 광양시 공고 제2022-214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5
- 광양시 공고 제2022-2151호 도로지정공고 6

조 례

- 광양시 조례 제1957호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 광양시 조례 제1958호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3
- 광양시 조례 제1959호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광양시 조례 제1960호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27
- 광양시 조례 제1961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광양시 조례 제1962호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53
- 광양시 조례 제1963호 광양시 갑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57
- 광양시 조례 제1964호 광양시 심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63
- 광양시 조례 제1965호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81

화 란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16.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82-5 (태인동) 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9, 23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1.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 부여 5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463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82-5 (태인동)	20221116	20090623	법정동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8, 1408-1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6 (황길동)	20221116	20111114	광양항 항만시설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220-8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360	20221116	20220112	대치재의 지형지물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421-2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1267 (마동)	20221116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689	전라남도 광양시 용장길 235-14 (성황동)	20221116	20081001	마을지명에서 인용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광양읍 회양현로 199-8	2022. 11. 16.	건축물대장 말소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전남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985-69 외 1	2022. 11. 16.	건물 철거 (※상세내역 불임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2388, 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6.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번	업무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희양현로 199-8	2022. 11. 8.	2022. 11. 16.	건축물대장 말소
2	건물번호 폐지	신재로 985-69	2021. 12. 9. (2022. 11. 14.)	2022. 11. 16.	건축물 멸실확인
3	건물번호 폐지	초암길 49	2018. 7. 10. (2022. 11. 14.)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2-2141 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대표자 (성 명)		주소	광양시 중동로 20
소하천명		창촌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1421-1		
	면적	0.226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2. 11. 11. ~ 2027.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전주)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광양시 공고 제2022-2151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2. 11. 15.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2. 11. 15. ~ 2022. 11. 29.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소유자	길이	너비	도 로 위 치	면적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453-5번지	전석기	60m	4m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453-5번지	25m ²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57호

붙 임 :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생협력 상가건물”이란 임차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3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말한다.

제3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지원 등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내의 상가건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 대책 대상 상가건물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②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에는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건물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상생협력 상가건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 상가건물의 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상생협력 상가건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생협력 상가건물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상가건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10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11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

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광양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광양시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광양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58호

붙임 :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2조(「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3조(「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광양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4조(「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
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5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6조(「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7조(「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질환자

제8조(「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9조(「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1호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질병으”로 한다.

제10조(「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한다.

제11조(「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12조(「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13조(「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장애와 상해의 기준)”을“(장해와 상해의 기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4. (생략)</p>	<p>제9조(위원의 해촉) ----- ----- ----- -----.</p> <p>1. <u>신체적·정신적 질환</u>----- -----</p> <p>2. ~ 4. (현행과 같음)</p>

제2조(「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p> <p>1. <u>심신장애</u>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3. (생략)</p>	<p>제3조의2(위원의 해촉) ----- ----- ----- -----.</p> <p>1. <u>신체적·정신적 질환</u>----- -----</p> <p>2.·3. (현행과 같음)</p>

제3조(「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u>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4. (생략)</p>	<p>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신체적·정신적 질환</u>----- -----</p> <p>2. ~ 4. (현행과 같음)</p>

제4조(「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u>심신장애</u>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4. (생략)</p>	<p>제8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신체적·정신적 질환</u>----- -----</p> <p>3. 4. (현행과 같음)</p>

제5조(「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u>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3. (생략)</p>	<p>제3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신체적·정신적 질환</u>----- -----</p> <p>2. 3. (현행과 같음)</p>

제6조(「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심신장애</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4. (생략)</p>	<p>제7조의2(해촉)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신체적·정신적 질환</u>----- -----</p> <p>3. 4. (현행과 같음)</p>

제7조(「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입장제한)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1. <u>전염병질환자</u></p> <p>2. ~ 4. (생략)</p>	<p>제16조(입장제한) ----- ----- ----- -----.</p> <p>1. <u>감염병질환자</u></p> <p>2. ~ 4. (현행과 같음)</p>

제8조(「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해임) 단장은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심의를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단원이 <u>심신장애</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5. (생략)</p>	<p>제4조(해임)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신체적·정신적 질환</u> ----- -----</p> <p>4.·5. (현행과 같음)</p>

제9조(「광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생략)</p> <p>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u>질병 또는 심신장애</u>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p> <p>2. ~ 4. (생략)</p>	<p>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 ----- ----- ----- -----.</p> <p>1. <u>질병으</u>----- -----</p> <p>2. ~ 4. (현행과 같음)</p>

제10조(「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p>	<p>제2조(정의) ----- -----.</p> <p>1. -----</p>

제12조(「광양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 ----- ----- ----- <u>장애정도</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u>장애와 상해의 기준</u>)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u>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	제5조(<u>장애와 상해의 기준</u>)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u>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59호

붙 임 :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광양시의회 의장이”를 “광양시의회에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p> <p>1. <u>광양시의회 의장이</u> 추천하는 시의원 1명</p> <p>2. ~ 4. (생략)</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u>광양시의회에서</u>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략)</p> <p>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u>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4. (생략)</p>	<p>제1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신체적·정신적 질환</u>으-----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9조(위탁관리)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② (생략)</p>	<p>제19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u>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0호

붙 임 :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광양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탄소 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지침 작성) 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

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라 한다) 작성·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 ① 광양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양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1호

붙 임 :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상태, 관리 상태,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관리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의 일부 또는 안전시설 설치비와 편의·위생용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15일 전”을 “15일 전”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7장(제1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포상 등

제19조(포상)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관리를 통해 공중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전 제2호서식)과 제6호 서식(중전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 불응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 위반	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불이행	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	건 물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개방화장실 현 황	시설	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	지정 층	층
	관리자			
개방시간				
<p>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광 양 시 장</p>				

【별지 제5호 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현 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p>「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p> <p>광 양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없 음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	상 호(명 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광 양 시 장</p>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3.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

-----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의 일부 또는 안전시설 설치비와 편의·위생용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다.

-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일정기간 개방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
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6
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
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사
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
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
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
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 별지 제5호 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② ----- 15일 이내 -----
----- 15일 전 ----- 별
지 제5호 서식 -----

③ -----
----- 별지 제6호 서식 -----

<신 설>

<신 설>

제19조 (생 략)

제7장 포상 등

제19조(포상)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관리를 통해 공중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과 금액		
		1차	2차	3차
1. <u>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u>	법 제21조 제1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u>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때</u>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u>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u>	법 제21조 제1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u>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u>	법 제21조 제1항제4호	10	20	30
5. <u>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u>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건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u>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 불응</u>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u>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 위반</u>	법 제21조 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u>개선명령을 불이행</u>	법 제21조 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		10	20	30
4. <u>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u>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5. <u>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u>	법 제21조제3항	5	10	20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건축물 현황	건물명			층수	지하: 층/지상: 층	
	주용도	연면적	m ²	준공일		
개방 화장실 현황	면적	총면적: m ² (남자: m ² / 여자: m ²)				
	개방 화장실 층	층				
개방 시간	상시개방(24시간 365일), 부분개방(시간 : ~ , 요일 :)					
시설 현황	변기	소변기	개			
		대변기	총 개 (남자: 개 / 여자: 개 / 장애인용: 개)			
	대변기 유형	동양식: 개, 서양식: 개				
편의 시설 설치 내역	냉방시설(), 난방시설(), 에어(페이퍼)타올(), 환풍시설(), 변기종류인식장치() 사용중 인식장치() 기 타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 기재					
<p>상기 본인은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2조제3항에 따라 광양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광양시장 귀하</p>						
관련서류	신분증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 화장실	건물명		전화 번호	
	소재지			
개방 화장실 현황	시설	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여 개 (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	지정 층	층
	관리자			
개방 시간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 용	여자 용	장애인 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 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시설현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전화번호 :)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 용	여자 용	장애인 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 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 화장실 신고 필증											
대표자	상호 (명칭)										
	성명										
	주소										
관리인		(전화번호:)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광 양 시 장</p>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유료 화장실 신고 필증											
대표자	상호 (명칭)										
	성명										
	주소										
관리인		(전화번호:)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광 양 시 장</p>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2호

붙 임 :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에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3호

붙 임 :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에 대하여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투자협약 체결된 업체는 사전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바. 시설물의 종류

2. 인·허가 접수일자

3. 의견제출 기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인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광양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니고 대표 등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성황·도이2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4호

붙 임 :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광양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광양시 도이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은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란 환지 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5. “부담률”이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그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 방식 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란 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를 포함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감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11.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2. “집단환지”란 개인이 받을 환지를 한데 모아서 공동주택용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광양시 도이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4조(위치 및 면적) ① 사업 시행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도이동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 시행 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되며,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청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용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

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4. 보조금
5. 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또는 용자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사업비
2. 영 제81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④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계약 등)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준공금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광양시 시보와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지계획 등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집단환지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위치·면적과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증가한 면적의 징수청산금을 완납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토지 등의 관리·처분)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그 지정일이나 정지처분일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 준공검사 및 전체 준공검사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환지의 징수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④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및 허가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원인자·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5조(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던 토지 및 환지계획에 따른

증환지 토지는 이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환지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환지의사가 있을 경우 징수청산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의사가 없거나 징수청산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철회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6조(청산)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1제곱미터마다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를 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수·교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8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① 시장은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해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변동 신고)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 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2조(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 결정
2.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 민원지적과장, 세정과장, 골약동장으로 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보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개발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를 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광양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지구명	종전의 토지				환지예정지			사용 면적 (㎡)	사용 목적	소유자	
	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	블록	롯트	면적 (㎡)			주소	성명

붙임 1. 허가조건

2. 환지예정지 도면 1부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이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부터 1m 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해야 하며, 만약 표시 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에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광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2. 10. 26.)에서 의결된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1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조례 제1965호

붙 임 :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광양시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인동리·목성리 일원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은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보류지”란 환지 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5. “부담률”이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내에서 그 책정계획에 따라 보류지로 책정된 토지를 환지 방식 적용사업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감보면적”이란 사업에 따라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를 포함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7.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감한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감환지”란 권리면적보다 토지 일부를 감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11. “교부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2. “집단환지”란 개인이 받을 환지를 한데 모아서 공동주택용지로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① 사업의 명칭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사업의 목적은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인동리·목성리 일원의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4조(위치 및 면적) ① 사업 시행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인동리·목성리 일원으로 한다.

② 사업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시행 기간 및 범위) ① 사업 시행 기간은 영 제40조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되며, 주된 사무소는 광양시청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 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등으로 충당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의 매각대금
2.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4. 보조금
5. 법 제56조·제57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담금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1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사업비
2. 영 제81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다른 회계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

④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계약 등) ① 시행자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손실 및 지출의 원인이 될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의 용역비, 공사비(기성·준공금을 포함한다), 감리비 등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비를 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도급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광양시 시보와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 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환지계획 등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의 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되, 부득이할 경우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집단환지 면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9.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위치·면적과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허가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③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④ 법 제31조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증가한 면적의 징수청산금을 완납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토지 등의 관리·처분) ① 환지예정지의 지정이나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그 지정일이나 정지처분일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5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 준공 전 사용허가, 부분 준공검사 및 전체 준공검사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증환지의 징수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3. 법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④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및 허가일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원인자·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5조(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던 토지 및 환지계획에 따른 증환지 토지는 이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환지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환지의사가 있을 경우 징수청산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의사가 없거나 징수청산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철회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6조(청산)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1제곱미터마다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를 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수·교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18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① 시장은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해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변동 신고)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 한계) 토지소유자 등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체의 청구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2조(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 결정
2.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단녹지센터소장, 민원지적과장, 세정과장, 광양읍장으로 한다.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보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 개발사업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를 해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 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지구명	종전의 토지				환지예정지			사용 면적 (㎡)	사용 목적	소유자	
	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	블록	롯트	면적 (㎡)			주소	성명

붙임 1. 허가조건

2. 환지예정지 도면 1부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이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부터 1m 이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환지예정지는 그 지정표시 말뚝에 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해야 하며, 만약 표시 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외의 사용 또는 연접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한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에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대리인 선정 신고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 구 명: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블록 롯트

환지예정지 면적: m²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①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주 소:

성 명: ①

생 년 월 일 :

첨부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광 양 시 장 귀하

